

# 農漁家負債輕減對策執行指針

'87. 3. 23

農林水產部

## I. 私債代替資金支援

### 1. 支援目的

農漁家의 高利私債를 低利의 制度金融으로 代替함으로서 金利負擔의 輕減에 따른 農漁家의 實質所得 向上에 寄與

### 2. 私債의 範圍

'87. 3. 16. 0時 現在의 私債

### 3. 支援規模 및 條件

#### 가. 支援規模 : 1兆원

- 低利資金 : 5,000億원(年利8%)
- 特別相互金融資金 : 5,000億원(年利14.5%)

#### 나. 支援條件

##### (1) 低利資金(年利 8%)

- 戶當限度 : 마을 配定額 範圍內에서 새마을 營農會(이하 “營農會”라 한다)가 定한 金額으로 하되 100萬원 을 超過할 수 없음.

○ 債還期間 : 2年据置 3年償還

(2) 特別相互金融資金(年利 14.5%)

○ 戶當限度 : 마을 配定額 範圍內에서 營農會가 定한 金額으로 하되 200萬원을 超過할 수 없음. 다만, 低利資金을 支援받은 農漁家에 對하여는 低利資金을 包含하여 200萬원을 超過할 수 없음

(3) 債權保全

- 信用이 良好한 者는 信用貸出 限度 以內에서 信用貸出함.
- 信用貸出限度 超過 또는 不適格者 - 擔保貸出 또는 農林水產業者 信用 保證基金 保證附(無立保)함.

(4) 延滯保有者에 對한 貸出

- 延滯債務에 不拘하고 支援對象에 包含하되 新規貸出實行日 以前에 發生한 延滯利子는 整理한 後 貸出함.

### 4. 支援對象者 選定基準

#### 가. 共通基準

- '87. 3. 15. 0時 現在 農漁村에 定着居住하고 있는 農漁家
- 알뜰한 家計運營과 誠實한 營農漁에

도 不拘하고 災害나 特用作物栽培等으로 經營收支의 惡火 또는 疾病等 不意의 事故로 夫得已 私債를 지고 있는 農漁家

- 다만, 아래 農漁可는 除外
  - 分에 넘친 消費生活, 射倖行爲 또는 投機 等으로 私債를 지게된 農漁家
  - 自力으로 負債償還能力이 있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農漁家

#### 나. 低利資金(年利8%) 支援對象

- 1.0ha以下에 準하는 農漁家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
  - 最近 3年以內에 災害를 입거나 營農漁에 失敗한 農漁家
  - 家族疾病이나 凶事, 教育費 等으로 夫得已 私債를 지게된 農漁家
  - '83~'84 소 入殖農漁家
  - 住宅改良事業 等으로 不可避하게 私債를 진 農漁家
  - 其他: 이에 準하는 事由로 어려운 農漁家

##### 〈1.0ha 以下에 準하는 農漁家〉

- 1.0ha以下の 農地를 所有하는 農家  
다만, 農地를 購入한 後 그 代金支拂 및 融資金償還이 終了되지 않은 農地는 所有農地 範圍에서 除外함.
- 非漁船漁業漁家, 無動力船 또는 5%以下 動力船을 使用하거나 小規模增·養殖(垂下·延繩式 3ha 또는 撒布·投石式 12ha 未滿)漁家
- 소 15頭, 돼지 75頭 또는 젖소 10頭以下의 養畜農家
- 其他 위에 準하는 어려운 農漁家
- 다만, 아래 農漁家는 除外
  - 家口員中 月平均所得 20萬원 以上의 傅給生活者가 있는 農漁家

- 위 所得水準을 上廻하는 施設園藝, 畜產, 增養殖 等 其他 兼業을 營爲하는 農漁家

#### 다. 特別相互融資資金(年利 14.5%) 支援對象

- 前 “나”項의 低利資金支援을 받지 못하는 私債保有 農漁家
- 低利資金을 支援받은 農漁家로서 低利資金 支援額을 超過하는 私債를 가진 農漁家

### 5. 資金配定

農水畜協이 行政機關과 協議하여 營農資金 配定基準, 零細小農漁家 戶數等을 勘案하여 配定(營農會까지)함.

### 6. 支援節次

#### 가. 私債代替資金 支援申請

- 對象農漁家는 所定 書式에 依據 營農會에 私債大替資金 支援을 申請함.  
(書式 第1虎)  
다만, 一般商號金融 取扱節次에 따라 私債代替資金을 擔保 또는 信用貸出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私債代替申請 없이 融資 받을 수 있음.
- 申請期間: '87. 3. 28~'87. 4. 3까지  
(營農會審查: '87. 4. 8까지)

#### 나. 支援對象者 決定

- 營農會는 審查委員會를 構成하여 配定限度內에서 資金別 支援對象者 및 金額을 審查決定, 邑·面長에게 通報함(書式 第2,3虎)  
※ 營農會는 審查決定된 事項을 2日以上 對象農漁家로 하여금 閱覽其疋

### 함.<書式 第2號>

- 邑·面長은 對象者를 確認하여 農水畜協組合에 通報함.<書式 第2,4號>
- 農水畜產業 兼業農漁家일 境遇는 主所得業種組合(農水畜協)에 通報함.  
※ 審查委員會 設置要領 :添附1

### 다. 融資實行

- 農·水·畜協組合은 邑·面長의 通報를 받아 이를 信用狀態等을 綜合 確認한 後 融資함.
- 融資金은 債務者에게 支給하되 그 大錢은 債權者의 預金通帳에 預置交付하도록 勸獎함.
- 私債代替資金을 擔保 또는 信用貸出 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一般相互金融取扱節次에 따라 '87. 4. 2.부터 融資 받을 수 있음.

## 7. 其他

- 私債代替申請 農漁家는 私債內容을 正確히 申請하여야 하며, 營農會 審查委員會는 이를 誠實히 審查하여야 함.
- 私債代替를 申請하는 農漁家는 別添書式의 覺書를 提出하여야 함.<書式 第5號>
- 虛偽 또는 不誠實 申請事實이 發見될 때는 融資金을 即時 回收하고 法的 措置等 必要한 制裁措置를 取함.
- 私債代替支援對象者가 農·水·畜協組合에서 支援 確定 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6月 以內에 融資 手續을 完了하지 않을 境遇에는 支援對象에서除外함

## II. 零細農漁家 中長期資金 의 低利資金 代替支援

### 1. 代替規模

3,740億원(推定)

### 2. 代替條件

- 期間 : 當初 債還期日에 不拘하고 3年 据置 7年 債還
- 金利 : 3.0%  
※ 殘存 債還期間이 10年以上일 境遇에는 金利만 3% 適用

### 3. 對象者 選定基準

- 中長期 資金을 貸出받은 0.5ha以下에 準하는 零細 農漁家

#### <0.5ha以下에 準하는 農漁家의 範圍>

- 0.5ha以下의 農地를 所有하는 農家
- 非漁船漁業漁家, 無動力船 또는 2톤以下動力船을 使用하거나 小規模增·養殖(垂下·延繩式 1.5ha 또는 撒布·投石式 6ha未滿)漁家
- 소8頭 끼지 38頭, 또는 餅소 5頭以上의 畜協農家
- 其他 위에 準하는 어려운 農漁家
- 다만, 아래 農漁家는 除外
  - 家口員中 月平均所得 20萬원 以上의 備給生活者가 있는 農漁家
  - 위 所得水準을 上廻하는 施設園藝, 畜產, 增養殖 等 其他 兼業을 營爲하는 農漁家

#### 4. 代替支援 對象資金

##### 가. 對象資金

農機械資金, 農漁民後繼者育成資金, 零細農自立支援資金, 農水產開發資金, 畜產振興基金, 財政中期資金, 漁船建造資金, 農村住宅資金等('83~'84 소입殖資金은除外)

※ 細部內譯은 別途 示達

나. 基準日 : 1987. 3. 16. 0時 現在(最終  
償還期日 經過貸出金 除外)

#### 5. 代替支援節次

- 가. 農水畜協組合(郡支部, 支店)은 農漁家에 支援된 中長期資金 内譯은 營農會에 通報함.
- 나. 營農會 審查委員會는 對象者 選定基準에 依據 代替資金支援對象者를 選定하여 邑·面長에게 通報함.  
※ 農水畜協에서 通報받은 날로부터 4日以內에 選定完了하여야 함.
- 다. 營農會로부터 通報받은 邑·面長은 對象者를 確認하여 農水畜協組合에 通報함.
- 라. 農水畜協組合(郡支部, 支店)은 對象者에 對해 基準日 前日까지의 利子(延滯利子 包含)를 徵收한 後 代替支援등 必要한 措置를 取함.
- 마. 代替支援對象者가 農水畜協組合에서 支援對象 確定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2月以內에 代替支援등 必要한 節次를 跳지 않을 경우에는 支援對象에서除外함.

### III. 農水產開聯資金 金利引下

#### 1. 引下內容

○ 引下金利 : 8.0% (現行 10.0~11.5%)

#### 2. 對象資金

農機械資金, 農水產開發資金, 畜產振興基金,

財政中期資金, 計劃造船資金, 漁船建造資金等

※ 細部內譯은 別途 示達

3. 施行日 : '87.3.16.0時

#### 4. 經過措置

'87.3.15以前에 貸出된 資金의 償還殘額元  
金에도 引下된 利子率을 適用

### IV. '83~'84 소입殖資金 利子代支給

#### 1. 現行金利 8.0%를 畜振基金에서 代支給

#### 2. 代支給 對象 資金

○ '83~'84支援 소입殖資金中 既延期  
된 全資金

#### 3. 利子 代支給 基準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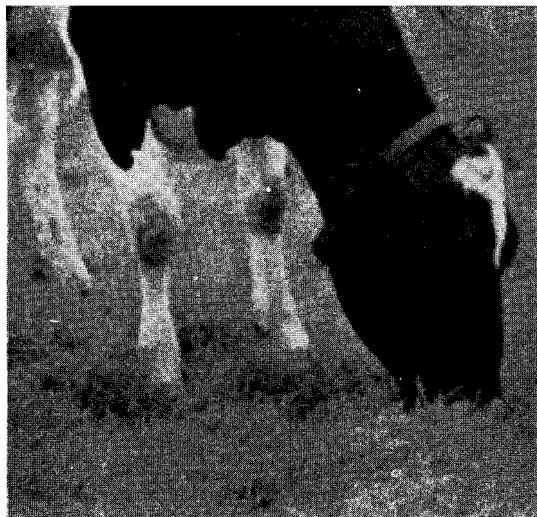
○ 1985.1.1以後 發生利子

## V. 延滯金利 引下調整

### 1. 對象資金

資 金 別	現 行	調 整	引 下 幅
營 農 漁 資 金	17.0	15.0	2.0
農 村 住 宅 資 金	19.0	17.0	2.0
零 細 農 自 立 資 金	19.0	17.0	2.0
相 互 金 融 資 金	20.0	18.0	2.0

2. 施 行 日 : '87.3.16.0時



地域의 農地

- 農地價格이 一定水準 以上 地域
- 國·公有 農地

### 2. 對象者選定方法

- 营農會 審查委員會에서 對象者를 推薦하여 邑·面·洞長에게 通報
  - 邑·面·洞長은 審查委員會를 構成, 審議를 거쳐 對象者를 選定하고 이를 農協組合長에게 通報함.
- ※ 審查委員會 : 地域管理委員會 構成豫定者  
豆 構成  
(農地管理委員會 構成時 機能 代替)

### 3. 支援限度

- 農家戶當 1,000坪 內外로 하되 融資支援 은 80% 水準으로 함.

### 4. 地域別 配定基準

農村地域의 耕地面積과 農家戶數等을勘案  
配定

### 5. 融資金 支援時期 : '87.5月以後

### 6. 其他 細部實施要領은 別途示達

# 유제품 수입실적 ('86/'85)

(단위 : kg, US \$)

구 분	'86		'85		대 비 %	
	중량 (A)	금액 (B)	중량 (A')	금액 (B')	A/A'	B/B'
유 장	10,616,972	7,140,140	10,481,266	5,673,714	101.3	125.8
탈지분유	376,475	285,669	2,760,478	2,010,010	13.6	14.2
탈지분유를 제외한 기타	—	—	266,550	195,069	—	—
전지분유	121,445	221,428	207,376	462,851	58.6	47.8
기타 밀크와 크림	—	—	534	1,456	—	—
버터	31,986	86,391	34,422	121,180	92.9	70.9
치아즈	112,983	490,412	91,858	434,717	123.0	112.8
유당	4,722,028	3,201,613	5,129,715	2,535,730	92.1	126.3
카세인	5,312,799	12,619,151	4,145,871	8,555,885	128.1	147.5
計	21,294,688	24,044,804	23,118,070	19,990,612	92.1	120.3

자료 : 관세청, 무역통계월보